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37
----------	-----

2019년 3월 7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1.24. 홍성룡 의원 대표발의(찬성자 노승재 의원
외 21명)

나. 회부일자 : 2019.1.31.

다. 상정 일자 :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 2019년 3월 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의안의 비용추계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안의 발의·접수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가. 주요내용

- 의원·위원회는 의안의 비용추계가 불필요한 사항의 경우 비용추계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안을 직접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업무처리
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원·위원회 등(이하 “의원 등”)이 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의무절차인 비용추계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각종 의안의 발의·접수 과정의 신속성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임.

2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예외 사항 신설(안 제3조제3항 신설)

- 의원 등은 각종 의안을 발의할 수 있고, 이때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하나, 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②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3조].
- 그러나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례상 규정이 흠결되어 있어 의안의 내용이 ① 상위법령 개정 및 기관(조직)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 ②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 ③ 그 밖에 의안의 내용이 명백히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의원 등은 의안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의회 예규로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예산정책담당관은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를 발급해 오고 있음[서울특별시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2조].

- 이는 2017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으로 단순추계·자구 수정과 같이 명백히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안의 경우 의원 등이 직접 ‘비용추계 비대상’임을 명기해 의사담당관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임.
- 이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조례와 규정에 따라 예산정책담당관은 비용 추계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의안의 비용추계 실적과 처리기간 등은 <표-1>과 같음.

<표-1> 제10대 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세부내역('18.12.31기준)

(단위: 건, 억원, 일)

유형	총 비용추계 건수	조례안 1건당		
		5년 평균 추계 비용 (A)	연(1년) 평균 추계 비용 (B=A/5)	평균 추계 소요기간
계	157	-	-	-
추계서 첨부	32	520	103.9	4.9
미첨부	1호	36	4.7	0.9
	2호	5	-	-
비대상	84	-	-	4

- 본 개정안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추계 비대상’ 의안 중 제1호(상위법령 개정 및 기관(조직)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 및 제2호(“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를 조례에 규정해, 그 흠결을 보완함과 동시에 부수적인 비용추계 절차 없이 의원 등이 의안을 직접 의사담당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의원입법 준비 및 발의 과정의 신속성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표-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 ② (생략) <신 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위원회는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상위법령 개정 및 기관(조직)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인 경우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 다만, 의회사무처(예산정책담당관) 의견조회 결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안의 직접 제출대상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므로 법리상 문제점은 없으나, 의안 접수 처리방식을 이원화(비용추계 첨부 접수, 직접 의안 접수)하여 운영함에 따라 의안접수부서(의사담당관)에서 개별 안전별로 의안의 직접 제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해 실무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기보다 의안 직접 제출대상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비용추계 없이 의안을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의 삭제)하여 의안 제출방식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붙임1 참조).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이 상위법령 개정 및 기관(조직)변경,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단순한 자구 수정 등 명백히 비용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 비용추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의사담당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상 흠결된 사항을 보완함과 동시에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2명 전원 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룡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37
----------	-----

발의년월일 : 2019년 1월 24일
발 의 자 : 홍성룡 의원(1명)
찬 성 자 : 노승재, 이승미, 고병국, 경만선,
성중기, 우형찬, 오중석, 송아량,
김경영, 이영실, 박순규, 박기재,
채유미, 김경우, 이정인, 오현정,
유 용, 최정순, 문장길, 최웅식,
노식래, 전병주 의원(22명)

1. 제안이유

의안의 비용추계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안의 발의·접수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원·위원회는 의안의 비용추계가 불필요한 사항의 경우 비용추계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안을 직접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위원회는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상위법령 개정 및 기관(조직)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인 경우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 ② (생략)</p>	<p>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위원회는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위법령 개정 및 기관(조직)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인 경우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신설>